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17
----------	-------

발의연월일 : 2023. 11. 27.

발 의 자 : 강은미 · 심상정 · 배진교
류호정 · 이은주 · 장혜영
김홍걸 · 윤영덕 · 윤미향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제6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제9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지방의료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민참여위원회) ① 지방의료원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에 관한 적용례) 지방의료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회의일 전날까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생략) 2. 이사 8명 이상 <u>12명</u> 이하 3. (생략) ②·③ (생략)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지역주민</u> 대표 1명 이상 <u><신설></u>	제8조(임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u>13명</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주민(제9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다)</u> ----- 6. <u>3년 이상 재직한 해당 지방의료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u>

⑤ ~ ⑦ (생 략) <u><신 설></u>	<u>받은 사람</u> ⑤ ~ ⑦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주민참여위원회) ① 지</u> <u>방의료원은 운영의 투명성 제</u> <u>고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u> <u>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u> <u>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u> <u>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u> <u>다.</u>
---	--